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702
----------	-------

발의연월일 : 2023. 9. 26.

발 의 자 : 소병훈 · 박완주 · 안호영
유기홍 · 최인호 · 박 정
허 영 · 김교홍 · 윤미향
서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먹는샘물등(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용기의 종류나 성능 등 기준·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에게 지체 없이 위반 사실의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영업자가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표명령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공표명령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공표의무와 공표내용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해당 벌칙과 관련한

영업자의 공표명령에 관한 의무와 공표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먹는샘물등은 업체에서 직영 생산하는 경우보다 주문자 위탁 생산(OEM)을 통해 주문업체가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먹는샘물등의 제품에 기재된 업체명과 제조업체가 다른 사례가 많음. 또한 최근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라벨이 없는 소위 ‘무라벨 생수’가 많아지면서 소비자가 제조사와 제품명 확인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임. 이로 인해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인 국민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 명칭’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영업자가 공표를 하더라도 포함해야할 내용의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표명령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함.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자의 공표명령에 따른 의무와 공표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공표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2제2항 등).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위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2. 해당 제품명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명칭
3. 사업장 소재지

4. 위반사실의 내용

5. 위반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및 유통기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47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공표내용의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2(공표명령) ① (생략)	제47조의2(공표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위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u><신 설></u> 제6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u>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u> <u>1.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u> <u>2. 해당 제품명 및 먹는물관련 영업자의 명칭</u> <u>3. 사업장 소재지</u> <u>4. 위반사실의 내용</u> <u>5. 위반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및 유통기한</u> <u>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제47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공표내용의 일부를 공표</u>
---	---

③ (생 략)	<u>하지 아니한 자</u> ③ (현행과 같음)
---------	-------------------------------